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규정

제정 2026. 05. 25.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며 그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

1. 학교체육진흥 및 연구, 조사에 관한 사항
2. 학교 운동부 창단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3. 신인선수 발굴에 관한 협조사항
4.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⑤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이는 회장의 임명을 거쳐야 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 소집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8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0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위원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
2.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
3.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

제12조(의무사항) 위원회의 위원,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할 수 없다.
2.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수당 등) 본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「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(2026. 05. 2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